

중국의 반(反)테러리즘법 제정을 위한 검토 : 미국 · 영국 · 독일과 비교하여

이대성* · 안영규**

요 약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鎮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진압(鎮壓), 대인(對人)·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Review for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China: Comparing it to those in the USA, Britain and Germany

Lee, Dae Sung* · Ahn, Young Kyu**

ABSTRACT

China has vast land, variety of people, religions and cultures. China has faced terrorism threat from the struggles of people, religions and resources. The 11th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decided to strengthen the anti-terrorism action on October 29, 2011. This study compared, analyzed and estimated the counter-terrorism laws of the USA, Britain and Germany thinking about the China's anti-terrorism decision. The counter-terrorism laws of the USA, Britain and Germany are largely composed of previous prevention of terror and oppression of it later. They enacted the laws both for people and property. They also rearranged the power and role of governmental institutes on counter-terrorism. The contents of the counter-terrorism laws are specific, detailed and systematic. But the anti-terrorism law of China has restriction on the power and roles for previous prevention and oppression of terrorism, handling of people and property. This study reviewed the foreign countries' counter-terrorism laws and the way to connect the regulations on terrorism crimes of the revised Chinese criminal law and the anti-terrorism decision, when they enact the anti-terrorism laws in China in the future.

Key words: Terror, Terrorism, Counter-Terrorism Policy, Counter-Terrorism Law, Anti-Terrorism Law

접수일(2014년 9월 26일), 수정일(1차: 2014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2014년 10월 27일)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문제의 제기

중국은 광대한 영토¹⁾와 다양한 민족과 언어²⁾, 그리고 종교와 문화³⁾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중국을 G2체제로 진입시켰고, 베이징 올림픽과 엑스포 개최 등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초석(礎石)이 되었지만, 그 이면(裏面)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내적 측면에서 중국의 개혁·개발정책은 경제의 고도성장⁴⁾을 가져왔으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기득권과 노동자·농민간의 갈등(葛藤)과 반목(反目)을 심화시켰다[5].

노동자와 농민은 생존(生存)이 보장되지 않자, 집단적 시위를 통하여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

다. 최근 중국의 집단적 시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에서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시위가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공산당 전체 당원의 65%가 노동자와 농민이었지만 2003년 50%, 2011년 40%로 그 비율이 급감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더 이상 혁명당이 아니라 집권당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보수 세력과 기득권의 대변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도 분배의 불평등, 환경오염,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과열 등 다방면에서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다. 또한 급격한 자본주의화로 인한 집단이익 요구증가, 정치사회적 불안정요소 증가, 전통적 사회 메커니즘(mechanism)약화, 부패 만연 등의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6].

대외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국가 이익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9년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에 대한 나토(Nato)군의 폭격과 신화통신(新華通訊)기자 사망사건[7], 2001년 해남도(海南島) 상공에서 발생한 미국정찰기와 중국전투기의 충돌사건 등이 있다[8].

그리고 중국은 15개 국가의 영토(領土)와 접경(接境)하고 있으며, 6개 국가의 영해(領海)에 인접(隣接)하고 있어, 최근 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남중국해 남사군도(南沙群島)·서사군도(西砂群島)·중사군도(中砂群島) 등에서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국가와의 분쟁, 그리고 동중국해 조어도(釣魚島)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하고 있다[9].

이 외에 가장 쟁점화 되는 것은 신장지역 위구르족 분리·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지역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인종적으로 터키·이란계이고, 언어는 인도·유럽계통이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과계민족(跨界民族)이다. 둘째, 위구르족에게 이슬람교는 종교인 동시에 생활방식이며,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가 신장지역 위구르족에게 민족자치(民族自治)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우위원칙(黨優位原則)을

1) 중국의 면적은 9,596,900km²으로 세계3위이고, 남북으로 남사군도(23°N)에서 흑룡강(53°32'N)까지 5,500km이며, 동서로 파미르고원(73°E)으로부터 우수리강(135°E)까지 5,500km에 해당된다. 1958년 9월 4일 영해를 12해리로 선언하였고, 1992년 2월 25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接續水域法)을 제정·공포하였다. 국경선의 총길이는 22,117km이고, 북동쪽으로 러시아·북한, 북쪽으로 러시아·몽골, 서쪽으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남서쪽으로 네팔·부탄·아프가니스탄·인도·파키스탄, 남쪽으로 라오스·미얀마·베트남과 인접하고 있으며, 해상으로는 황해·동중국해·타이완 해협 등을 사이에 두고 한국·일본·대만 등의 국가와 인접해 있다[1].

2) 중국의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13억 2802명이고, 한족(漢族)이 91.9%, 55개 소수민족이 9,1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 중에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은 장족(壯族)·몽골족(蒙古族)·조선족(朝鮮族)·티베트족(藏族)·위구르족(維吾爾族)·만주족(滿洲族)·회족(回族) 등 18개 민족이 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동북(東北)·서북(西北)·서남(西南) 각 자치구의 스텝(steppe)기후·산악·고원지역 등에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 중국 국토의 60%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2].

3) 중국의 종교는 무신교(無神教)를 원칙으로 하지만, 도교·불교·이슬람교·개신교 등을 믿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 중국어(普通話)이고, 방언으로는 북방방언(北方方言)·오어(吳語)·광둥어(廣東語)·푸젠어(福建省)·하카어(客家語)가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은 되지 않는다.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21개 민족은 자신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어(壯語), 티베트어(藏語) 위구르어(維吾爾語) 등이 상용(常用)되고 있는데, 회족(回族)·만주족(滿洲族) 등의 민족은 한족화(漢族化)되어 표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3].

4) 최근 20년간 중국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전체 중국 평균 GDP는 6천 달러를 초과하였고,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4].

내세워 민족자치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정책이행은 당(黨)의 감독과 지시를 받게 하고 있다. 넷째, 신장지역 자원배분과 개발 등의 문제에 위구르족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동해안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었다[10].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신장지역 위구르족에 의한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반(反)테러리즘법 제정을 앞두고 많은 고심(苦心)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각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연혁

2.1. 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경향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인종갈등(人種葛藤)과 반전투쟁(反戰鬪爭) 등으로 인한 국내테러리즘이 주로 발생하다가, 1970년 이후에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이 급증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항공기납치(aircraft hijacking)·항공기폭파(sabotage bombing of airborne aircraft) 등에 의한 희생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84년 10월 「국제테러리즘 규제법(1984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을 제정하였다. 특히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리즘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1996년 4월 「중합테러리즘 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워싱턴 국방부 건물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국제테러리즘이 발생하였다. 9·11사태 직후인 2001년 10월 「테러리즘 제동 및 방해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를 제정하였다. 2004년 12월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신설되면서 정보공동체의 재정비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동년 12월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로 「The USA Patriot Act of 2001」에 대한 5년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16개 한시조항(限時條項) 중에서 14개 조항을 영구화하고, 추적감청 허용 등 2개 조항 효력을 4년간 연장하는 「USA Patriot Act 보완 및 한시법(限時法)조항 재승인(再承認)에 관한 법률(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5)」를 2006년 3월 통과시켰다[11].

2.2. 영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영국은 북아일랜드 공화국의 테러리즘에 대처(對處)하기 위하여 1973년 7월 「북아일랜드 긴급조치법(Northern Ireland Emergency Provisions Act)」를 제정하였고, 1974년 아일랜드 공화군(Irish Republican Army)에 의한 폭탄테러리즘이 발생하자, 동년 11월 「테러리즘 임시조치법(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북아일랜드 긴급조치법(Northern Ireland Emergency Provisions Act)」와 「테러리즘 임시조치법(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을 정리·통합하고, 테러리즘 혐의자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對)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0)」을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2001년 9·11테러리즘이 발생하자 2001년 12월 「반(反)테러리즘·범죄·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을 제정하였고, 2005년 7월 7일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리즘을 계기로 2006년 3월 「대(對)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6)」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도 「대(對)테러리즘법(Counter-Terrorism Act 2008)」을 제정하였다[12].

2.3.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독일은 1970년 12월 제11차 「형법」 개정에서 항공 교통에 대한 공격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테러리즘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1971년 12월 제12차 「형법」 개정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납치 및 인질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13].

그리고 독일은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9월단(Black September)과 좌익계열 적군파(Rote Armee Fraktion)에 의한 국제테러리즘을 억지(抑止)하기 위해 1974년 12월 「형사소송법 보완법(Gesetz zur Ergänzung des 1. StVRG vom 20.12.1974)」를 제정하였고, 1976년 8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연방변호사법 및 행형법의 개정에 관한 법(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 ordn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Bundesrechtsantw-alt sondnung und Strafvollzugs-gesetzes vom 18. August 1976)」을 제정하였다. 또한 1978년 4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ß ordnung vom 14.4.1978)」을 제정하였으며, 1989년 6월 「형법, 형사소송법 및 집회법 개정과 테러범죄에 있어서 공범증인 규정 도입에 관한 법(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 ordnung und des Versammlungsgesetzes und zur Einführung einer Kronzeugenregelung bei terroristischen Straftaten)」을 제정하였다[14].

특히 미국의 9·11사태 이후, 2002년 1월 「국제테러리즘 척결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를 제정하였고, 2007년 1월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Gesetz zur Ergänzung des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es)」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 「국제테러리즘 방어법(Gesetz zur Abwehr von Gefahren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durch das Bundeskriminalamt)」를 제정하였다[15][16].

2.4. 중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제정과정

중국의 「형법」은 테러리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1979년 「형법」 제100조 반혁명을

목적으로 선박·비행기·기차·전차·자동차를 강탈하는 경우, 제107조 기차·자동차·전차·선박·비행기를 파손하여 기차·자동차·전차·선박·비행기로 하여금 전복·파손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 제108조 철도·교량·터널·도로·비행장·항로·등대 등을 파괴하거나 기타 파괴활동을 하여 기차·자동차·전차·선박·비행기로 하여금 전복·파손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 제110조 교통수단·전력·가스설비·폭발물 설비 등을 파손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통하여 테러리즘 관련 범죄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1992년 「항공기납치 범죄자 처벌에 관한 결정」을 통하여 1979년 「형법」의 반혁명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삭제하였고, 납치행위 방식을 폭력·협박 또는 기타 방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납치행위 대상을 비행기에서 항공기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항공기 테러리즘 관련 규정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1997년 「형법」을 통하여 테러리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죄(罪)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감당해야 하는 조약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국제테러리즘 범죄처벌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형법」 제120조 테러단체의 조직·지도·참가죄를 신설한 것은 최초로 테러리즘 관련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셋째, 「형법」 제114조와 제115조 방화·결수·폭발·위험물질 투입 및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罪), 제116조에서 제119조 교통수단 파손죄·교통설비 파손죄·전력설비 파손죄·폭발물설비 파손죄, 제121조 항공기 납치죄, 제122조 선박·자동차 납치죄, 제123조 폭력으로 비행안전을 위협한 죄, 제124조 통신설비 파손죄, 제125조 재료의 불법판매·운송죄, 제232조 고의살인죄, 제234조 고의상해죄, 제239조 납치죄 등을 규정하였다. 위의 「형법」 규정들은 테러리즘을 독립적 범죄행위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테러리즘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안전 위해죄, 공민 인신 권리 침해죄, 민주 권리죄, 사회관리 질서방해죄 중에서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거나 테러범(terrorist)들이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한 것이다[17].

중국은 2001년 UN 「안보리 제1373호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크게 새롭게 신설된 법과 수정·확대·삭제된 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18][19]. 전자는 첫째, 「형법」 제8조에 폭발위협·생화학위협·방사선위협 등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테러정보임을 명백히 알고도 고의적으로 전파하여 심각하게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테러정보의 조작과 고의전파죄 둘째, 「형법」 제120조 1에 테러활동조직을 지원하거나 테러활동을 실시한 개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테러활동지원죄 셋째, 「형법」 제291조에 해로운 방사성과 전염성 병원체 등 물질을 투여하여 심각하게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위험물투여죄·허위테러정보발조죄·전파죄가 있다. 후자는 첫째, 「형법」 제114조의 일부내용을 삭제하여 법조문을 간소화하였고, 제114와 제115조에 해독성·방사성·전염성 병원체 등 물질을 투여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독극물투여죄에서 위험물질투여죄로 수정·확대하였다. 둘째, 「형법」 제125조 제2항에 독해성·방사성·전염성병원체 등 물질을 불법제조·매매·운송 저장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핵재료 불법매매운송죄에서 위험물질 불법제조매매운송저장죄로 확대하였다. 셋째, 「형법」 제127조 제2항에 총기·탄약·폭발물 강탈죄의 대상범위를 총기·탄약·폭발물 강탈 또는 방사성·해독성·전염성 병원체 등의 물질로 확대하였다. 넷째, 「형법」 제191조를 수정하여 테러활동범죄를 기존의 마약범죄·조직폭력 성격의 조직범죄·밀수범죄에 둔세탁의 상위범죄를 포함하였다.

3. 각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분석

3.1. 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주요내용

1984년 10월 제정된 「국제테러리즘규제법(1984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수립·조정, 국가기관간의 협력·정보체계구축·대응능력향상, 그리고 주도적인 국제협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20].

1996년 4월 제정된 「종합테러리즘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은 미국 내에서 테러리즘을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대상으로 명기하였고, 대(對)테러리즘 수사권을 보장하였으며, 테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내(內)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연방범죄로 규정하면서 연방수사기관과 연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고, 대(對)테러리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미국테러리즘방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연방수사기관에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금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생화학테러리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제테러리즘 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국제테러리즘 조직 및 테러범의 미국 입국 규제·추방절차 간소화·비자발급 및 망명허가 요건 강화하였으며, 테러리즘 지원국과 교역하는 개인 또는 국가에 대한 제재 등을 명시하였다[21].

2001년 10월 제정된 「테러리즘 제동 및 방해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는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연방수사국(FBI)의 감청권한을 확대하였고, 범죄수사정보의 공유권(公有權)을 명시하였으며, 테러리즘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연방형사규칙 중 대배심(大陪審)에서 재판절차 녹음 및 공개에 관한 규정과 전자통신·대화 등의 감청내용 공개 및 사용권한에 따라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유선·대화·전자통신감청 및 정보공개 제한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설정하였으며, 테러조직 자금지원에 대한 사전방지·추적·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테러범 구금·석방·확증 및 확증의 심리 소송절차 개시·출정영장(出廷令狀) 및 재심리를 규정하였고, 외국학생 비자감독 프로그램의 전면시행 및 확대·입국정보와의 통합 등을 명기하였다[22].

2004년 12월 제정된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 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는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게 국가정보프로그램(National Intelli-

gence Program)의 이행지시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법무부장관과 합의한 지침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각 부처·기관이 수집한 모든 국가정보 및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23].

3.2. 영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주요내용

2000년 제정된 「대(對)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0)」은 내무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Office)에게 특정단체가 테러리즘의 자행·참여·준비·조장·선동·기타 테러리즘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단체를 테러리즘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감청·채포·수색·검색 등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였으며, 「조사권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 Powers Act)」를 개정하였다. 특히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와 관련하여 「생물무기법(Biological Weapons Act 1974)」, 화학무기(Cheical Weapon)에 대해서는 「화학무기법(Cheical Weapons Act 1996)」, 핵무기(Nuclear Weapon)와 관련해서는 핵물질방호협약(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을 준용하였다. 2001년 12월 제정된 「반(反)테러리즘·범죄·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은 테러리즘 예방과 테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Terrorism Act 2000」의 내용을 수정한 법률로서 하급심 판결 전에도 테러리즘 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국 경제와 영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을 위하여 「긴급재정 명령법(The Emergency Laws Act 1964)」와 「금융법(The Finance Act 1968)」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국제 테러리즘 혐의자로 의심되는 자를 입국금지·추방대상 확대를 위하여 「이민법(Immigration Act 1971)」을 개정하였다[24][25].

2006년 3월 제정된 「대(對)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6)」은 인터넷이나 출판물을 통해 테러리즘을 찬양·고무하거나 발간물 출판·판매 등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구체적 테러리즘 계획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테러리즘 실행 또는 지원할 의도를 가진 준비행위까지 테러리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였으며, 테러리즘 관련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한 장소뿐만 아니라 혐의자가 점유·통제하는 모든 곳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2008년 10월 제정된 「대(對)테러리즘법(Counter-Terrorism Act 2008)」은 테러범 등록 및 동향관찰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여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테러리즘 수사를 위하여 개인 지문과 DNA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리적인 판단 하에 테러리즘 혐의자의 주거를 강제로 수색할 수 있게 하였다[26][27].

3.3.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주요내용

1976년 8월 제정된 「형법, 형사소송법, 범법조직법, 연방변호사법 및 행형법의 개정에 관한 법(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 ordn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Bundesrechtsantw-alt sondnung und Strafvollzugsgesetzes vom 18. August 1976)」은 테러단체조직죄의 도입 및 테러범죄 계획의 불고지죄를 신설하였고, 범죄행위 계획의 불고지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형사절차(刑事節次)와 행형단계(行刑段階)에서 테러범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테러범에 대한 구성요건의 완화, 통신감청, 주거·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검문소 설치, 서류 기타 물건 수수의 제한과 감시 등을 허용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28].

2002년 1월 제정된 「국제테러리즘 척결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은 첫째, 「연방헌법수호법(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연방국경수비법(Bundesgrenzschutzgesetz)」· 「연방범죄수사청법(kriminalamtgesetz)」·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등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i) 각 보안기관에 필요한 권한의 부여, ii) 행정기관 간에 자료 교환의 개선, iii) 테러범죄 형사범이 독일로 입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iv) 비자발급절차에서 신원확인조치 개선, v) 독일 내에 거주하는 과격주의자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 등이다. 둘째, 「보안심사법(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여권법(Passgesetz)」· 「단체

법(Vereingengesetz)」·「연방중앙등록법(Bundeszentralregistergesetz)」·「항공법(Luftverkehrsgesetz)」·「신분증법(Gesetz über Personalausweise)」등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i) 보안에 민감한 활동분야에 대한 심사 강화, ii) 여권과 주민등록증에 생체인식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 iii) 독일 내에서 과격한 외국인 단체 활동을 신속히 저지, iv) 민간항공기(民間航空機)에서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다[29].

2007년 1월 제정된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Gesetz zur Ergänzung des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es)」는 첫째, 국제테러리즘 척결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에 포함되어 있던 「연방정보부법(Bundesverfassungsschutz-gesetz)」·「국방정보부법(MAD-Gesetz)」·「해외담당정보부법(BND-Gesetz)」의 적용을 연장하였으며 둘째, 개정·보안된 내용은 i) 정보기관의 통화자 확인 정보 취득권은 구체적인 범죄모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중대한 위협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허용, ii) 연방금융감독원 소재 계좌 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것을 규정, iii) 해외담당정보부(BND)와 국방정보부(MAD)의 정보취급 권한을 연방정보부(BfV) 수준으로 확대, iv) 모든 정보기관에 혐의자 수배 권한 부여, v) 정보기관의 차량 관련 정보를 상시(常時) 온라인(on-line)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 vi) 세관에 테러리즘 자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vii) 동 법률의 효력은 5년으로 제한하며 기관이 경과되기 전(前)에 이 규정들에 대한 효과를 재평가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30].

3.4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 주요내용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을 하였다. 동 결정의 주요 내용은 반(反)테러리즘 업무 강화, 국가 안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반(反)테러리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31]. 첫째, 국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반대하고, 강경한 법에 의거하여 테러리즘 활동조직을

단속하며, 테러리즘 활동을 빈틈없이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한다.

둘째, 테러리즘 활동이란 사회 공황(恐慌)을 조장하고, 공공 안전을 위해(危害)하거나, 국제기구와 국가기관을 위협할 목적으로 폭력·과포·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인명살상·중대한 재산손실·공공시설파손·사회질서혼란 등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심각한 사회손상 행위 및 선동, 출자 원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술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의 반(反)테러리즘 업무지도기구와 전국 반(反)테러리즘 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 및 지휘를 하여야 하고, 국가안전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은 각 부서 직무를 관장하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법률에 근거한 반(反)테러리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국가 반(反)테러리즘 업무지도기구는 동 결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테러리즘 활동조직 및 테러범(terrorist)명단을 조정하고, 국무원 공안부문을 테러리즘 활동조직 및 테러범 명단을 공포한다.

다섯째, 국무원 공안부문이 테러리즘 활동조직 및 테러범 명단을 공포할 경우에는 테러리즘 활동조직과 테러범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과 관련한 동결을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특정 비(非)금융기관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공포한 테러리즘 활동조직 및 테러범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과 관련해서 즉시 동결함과 동시에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공안부문, 국가안전부문, 그리고 국무원 반(反)자금세탁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여섯째,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평등호혜 원칙에 의거하여 반(反)테러리즘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일곱째, 국무원은 테러리즘 활동조직 및 테러범 명단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국무원 반(反)자금세탁행정주관부문, 국무원 공안부문, 그리고 국가안전부문은 회동을 통하여 테러리즘 활동 연관 자산 동결을 제정·결정한다.

4. 각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평가

4.1. 미국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1984년 10월 제정된 「국제테러리즘 규제법(1984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은 조직(組織) 측면에서 연방정부,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업무를 제정립 및 조정하였다.

1996년 4월 제정된 「국제테러리즘 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에서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관련 규정 등을 제정비하였고, 사후진압(事後鎮壓) 측면에서 연방수사기관의 수사권 보강과 처벌 규정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인적(對人的) 측면에서 테러범의 입국 규제·추방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1년 10월 제정된 「테러리즘 제동 및 방해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는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감청권한을 확대하였고, 사후진압(事後鎮壓) 측면에서 증거재판주의를 강화하였으며, 대인적(對人的) 측면에서 외국인 입국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강화 및 통합하였다.

2004년 12월 제정된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 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는 대(對)테러리즘과 관련된 16개 국가기관의 업무를 신설된 국가정보국(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집중시켰고, 국가정보국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였다.

4.2. 영국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2000년 제정된 「대(對)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0)」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에서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에 대해서 「생물무기법(Biological Weapons Act 1974)」, 「화학무기법(Chemical Weapons Act 1996)」, 그리고 핵물질방호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을 준용하였다.

2001년 12월 제정된 「반(反)테러리즘·범죄·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에서 테러리즘 자금 몰수와 재산 동결을 위하여 긴급재정명령법(The Emergency Laws Act 1964)와 「금융법(The Finance Act 1968)」을 일부 개정하였고, 대인적(對人的) 측면에서 국제테러리즘 혐의자에 대한 입국과 추방을 위해 「이민법(Immigration Act 1971)」을 개정하였다.

2006년 3월 제정된 「대(對)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6)」은 사상(思想)·이념(理念)·종교(宗教) 등의 측면에서 테러리즘과 관련된 언론·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의 예비(豫備)·음모(陰謀)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였으며, 대인(對人)·대물적(對物的) 측면에서 압수(押收)·수색(搜索)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2008년 10월 제정된 「대(對)테러리즘법(Counter-Terrorism Act 2008)」은 사전예방(事前豫防)과 대인적(對人的) 측면에서 테러범 등록 및 동향관찰제도를 도입하였고, 사후진압(事後鎮壓)과 대인적(對人的) 측면에서 개인 지문·DNA 시료채취 등을 허용하였다.

4.3. 독일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1976년 8월 제정된 「형법, 형사소송법, 범원조직법, 연방변호사법 및 행형법의 개정에 관한 법(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 ordn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und Strafvollzugsgesetzes vom 18. August 1976)」은 사후진압(事後鎮壓) 측면에서 형사절차와 행정단계에서 테러범에 대한 권리 제한 특례 등을 마련하였다.

2002년 1월 제정된 「국제테러리즘 척결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은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조직(組織) 측면에서 「연방헌법수호법(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연방국경수비법(Bundesgrenzschutzgesetz)」· 「연방범죄수사청법(kriminalamtgesetz)」·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z) 등의 권한과 역할 등을 재정비하였고, 대인적(對人的) 측면의 「보안심사법(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여권법(Passgesetz)」·「단체법(Vereingengesetz)」·「연방중앙등록법(Bundeszentralregistergesetz)」·「항공법(Luftverkehrsgesetz)」·「신분증법(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등을 개정하였다.

2007년 1월 제정된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Gesetz zur Ergänzung des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es)」는 국제테러리즘 척결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에 포함되어 있던 「연방정보부법(Bundesverfassungsschutzgesetz)」·「국방정보부법(MAD-Gesetz)」·「해외담당정보부법(BND-Gesetz)」의 적용을 연장하였고, 국가정보 관련 기관인 해외담당정보부(BND)·국방정보부(MAD)·연방정보부(BfV) 등의 권한과 역할 등을 재정립하였다.

4.4. 중국의 대(對)테러리즘법 시사점

1979년 개정된 「형법」은 테러리즘에 대한 명시적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리즘과 관련된 대물적(對物的) 측면의 규정을 열거하였다.

1992년 개정된 「형법」은 사후진압(事後鎮壓)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의 항공기테러리즘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1997년 개정된 「형법」은 대인(對人)·대물적(對物的) 측면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2001년 UN 「안보리 제1373호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 개정된 「형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에서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관련 범죄를 정비하였다.

2011년 10월 결정(決定)된 반(反)테러리즘 업무의 내용은 테러리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반(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도 분산되어 있다. 또한 반(反)테러리즘 활동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5. 결 어

동서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에 의한 G2체제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G2체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협 중에서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테러리즘이다. 이에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을 하였는데, 동 결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동 결정의 테러리즘 개념은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에 테러리즘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1997년 개정된 「형법」과 2001년 UN 「안보리 제1373호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 개정된 「형법」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결정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아 테러리즘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反)테러리즘 업무에 혼선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 쟁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反)테러리즘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1월 제정된 독일의 「국제테러리즘 척결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의 시사점을 검토하여야 하고, 2004년 12월 제정된 미국의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 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에서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역할과 국가정보국장(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권한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 결정의 반(反)테러리즘 활동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事前豫防)활동과 사후진압(事後鎮壓)활동으로 구분하고, 대인적(對人的) 측면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i) 사전예방 대인적 측면의 테러리즘 관련 정보수집·출입국규제·감청 등은 2001년 미국이 제정한 「테러리즘 제동 및 방해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2001년 영국이 제정한 「반(反)테러리즘·범죄·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2002년 독일이 제정한 「국제테러리즘 척결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등의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사전에방 대물적 측면에서 최근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는 1996년 미국이 제정한 「국제테러리즘 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2000년 영국이 제정한 「국제테러리즘규제법(1984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iii)사후진압 대인적 측면의 테러리즘 관련 체포·수사·기소·재판 등은 독일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연방변호사법 및 행정법의 개정에 관한 법(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 ordn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Bundesrechtsantw-alt sordnung und Strafvollzugsgesetzes vom 18. August 1976)」, 미국의 「국제테러리즘 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과 「테러리즘 제동 및 방해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영국의 대(對)테러리즘법(Terrorism Act 2006)과 대(對)테러리즘법(Counter-Terrorism 2008) 등을 고찰하여야 한다. iv)사후진압 대물적 측면의 테러리즘 관련 주거와 건축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과 테러리즘 자금 관련한 재산동결·자금몰수 등은 독일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연방변호사법 및 행정법의 개정에 관한 법(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 ordn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der Bundesrechtsantw-alt sordnung und Strafvollzugsgesetzes vom 18. August 1976)」과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Gesetz zur Ergänzung des Terrorismus bekämpfungsgesetzes)」, 영국의 「반(反)테러리즘·

범죄·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http://korsino.or.kr/infor09.htm>: 2014.4.9.
- [2] <http://ko.wikipedia.org/wiki>: 2014.4.10.
- [3] 신현기, 「비교경찰제도를」, 법문사, 2012.
- [4] 조용찬, “중국, 금융위기 속 소비 양극화 뚜렷”, C hindia Journal, 6-8, 2009.
- [5] 이중희, “중국의 소비 양극화와 정책 대응”, 국제지역연구, 13(2): 318-327, 2009.
- [6] 門洪華, 「中國: 大國崛起」浙江人民出版社, 2004.
- [7]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80285_6218.html: 검색일 2010.4.10.
- [8]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342143>: 검색일 2011.12.14.
- [9] 유철중,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
- [10] 김광역, “다민족 국가인 중국(中國) 이해하기”, C hindia Journal, pp. 42-23. 2007.
- [11] 박용기, “미국 테러방지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 우리 테러방지법체 정비방안 검토”, 해외연수검사논문, 6-7, 2006.
- [12] 윤태영,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한국위기관리논집, 6(1): 85-86, 2010.
- [13] 이진중·조현지, 「각국의 테러범죄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14] 이대성·김상원,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테러학회보, 7(1): 141, 2014.
- [15] 권영법,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의 검토”, 인권과 정의, 436: 96, 2013.
- [16] http://www.bmi.bund.de/SharedDocs/Gesetzestexte/DE/BKAG_Aenderung.pdf?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 2014.4.18.
- [17] 모홍씨엔·리잉평, “중국 ‘반테러리즘’ 형사입법과 보완구상: 형사실체법 시각에서”, 비교형사법연구, 11(2): 413-415, 2009.
- [18] 음건봉, “중국의 테러활동범죄에 관한 입법 연

- 구”, 동아법학, 49: 261-262, 2010.
- [19] 신상철,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에 대한 연구”, CHINA연구, 15: 158-164, 2013.
- [20] <http://www.ncjrs.gov/pdffiles1/Digitization/5417ONCJRS.pdf>: 검색일 2014.4.6.
- [21] <http://www.hsdl.org/?view&did=439652>: 검색일 2014.4.7.
- [22] <http://www.selectagents.gov/resources/USAPatriotAct.pdf>: 검색일 2014.4.8.
- [23] <http://www.dni.gov/index.php>: 검색일 2014.4.9.
- [2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11/contents>: 검색일 2014.4.12.
- [2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24/contents>: 검색일 2014.4.13.
- [2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11/contents>: 검색일 2014.4.14.
- [2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8/28/contents>: 검색일 2014.4.15.
- [28] 신의기,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29] <http://www.buzer.de/gesetz/4197/index.htm>: 검색일 2014.4.16.
- [30] <http://www.buzer.de/gesetz/7588/index.htm>: 검색일 2014.4.17.
- [31] <http://www.npc.cn>: 2014.4.9.

[저 자 소개]



이 대 성 (Lee, Dae Sung)

1997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0년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2004년 동국대학교 형사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email : dorian3145@daum.net



안 영 규 (Ahn, Young Kyu)

2001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8년 동국대학교 경찰학석사
2012년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
現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email : ayk93@hotmail.com